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사고지”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6월 13일

파주시 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파주읍 연풍리 48-1, 48-3번지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4에 따라 “사고지(불법성토)”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파주읍 연풍리	48-1	답	1,796	부적합한 토사 반입 (무기성오니, 재활용골재 등)
2		파주읍 연풍리	48-3	답	1,683	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 시
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 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”로 지형도면자료 생략